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39

발의연월일: 2020. 8. 18.

발 의 자 : 인재근・소병훈・허 영

송갑석 • 기동민 • 김원이

최혜영 · 최종윤 · 강선우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의 주류, 마약류·환각물질(이하 "주류등")의 섭취·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종사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섭취·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내 공항에서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하여 음주 등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·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,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

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06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6호"를 "제7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제106조"를 "제106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10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

제10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 등 섭취·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 및 제146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

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5조(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	제105조(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
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)	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	①
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	
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	
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	
<u>제6호</u>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	<u>제7호</u>
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제106</u> 조에서 준용하는 제94	5. <u>제106조제1항</u>
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	
안전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	
아니한 경우	
<u><신 설></u>	6. 제10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
	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
	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
	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
	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
	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
<u>6.</u> (생 략)	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106조(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자에 대한 준용규정) (생 략)

<신 설>

제106조(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자에 대한 준용규정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
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
의 주류등 섭취·사용 제한에
관한 사항은 제57조 및 제146
조를 준용한다.